

2025년 K-콘텐츠 AI 혁신 선도 프로젝트 공고문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K-콘텐츠 AI 혁신 선도 프로젝트 ○ 사업목적: 문화산업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산업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 투자를 통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창업기업)이 협력하는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 사업기간(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26. 5. 15.까지 (8개월 *예정)																						
지원내용																						
[K-콘텐츠 AI 혁신 선도 프로젝트]																						
지원내용	○ 글로벌향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비즈니스(사업화) 모델 발굴, 산업생태계 상생 지원 ※ 대규모 신규 사업 특성상 신청 기업의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제 예시입니다. <과제예시> ① [게임] AI vs 인간: AI 플레이어와 인간 게이머의 대결형 챌린지(FPS, 스포츠 등) ② [체험] AI Content EX Zone: 유희공간 활용 AI 콘텐츠 체험 및 몰입 경험 제공 ③ [공연] AI V-FEST: AI디지털 아티스트 공연 실증, 버추얼·디지털 휴먼 대형 공연 개최 ④ [방송] AI Show Time: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과 출연자 간의 방송 프로그램																					
	○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창업기업) One Team 구성(총 4개 이상)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참여기관 구성 가능 ※ 과제별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1개 이상 필수, 중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2개 이상 필수 ※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산학협력단 지원 불가 <table border="1" data-bbox="391 1064 1390 1424"> <thead> <tr> <th>구분</th> <th>기업유형</th> <th>구성</th> <th>관련근거</th> </tr> </thead> <tbody> <tr> <td>주관 기관</td> <td>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td> <td>필수 (1개)</td> <td> · (대기업)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특별법 등에 의한 기업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td> </tr> <tr> <td rowspan="2">참여 기관</td> <td>대기업 중견기업</td> <td>필수 또는 선택</td> <td rowspan="2"> ·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등에 의한 기업 ※중소기업인증서 등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의한 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등 (창업한지 7년 이내 기업) </td> </tr> <tr> <td>중소기업 창업기업</td> <td>필수 (2개 이상)</td> </tr> </tbody> </table> ※ 주관기관, 참여기관 역할 – 신청 과제 특성에 따라 변동 가능 <table border="1" data-bbox="391 1480 1390 1700"> <thead> <tr> <th>구분</th> <th>주요역할</th> </tr> </thead> <tbody> <tr> <td>주관기관</td> <td> · 총괄 기획 및 사업 관리, 과제 목표 및 성과관리 · 사업비 예산 집행 관리, 보유 IP, 자산 협업 및 지원 등 </td> </tr> <tr> <td>참여기관</td> <td> ·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작, 인공지능(AI) 기술 구현 · 인공지능(AI) 기술 검증, 과제 목표 및 사업 성과 창출 등 </td> </tr> </tbody> </table> ○ 컨소시엄 구성 시 유의사항 - 주관기관, 참여기관은 e-나라도움 등록 필수, 자부담은 모두 현금만 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참여인력 e-나라도움 등록 시 참여율 100% 이상 등록 불가능 - 25인공지능콘텐츠제작지원 등 최종 선정 기업 지원 가능 -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10조(지원요건) 제1항 제2호 비적용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가능) - 동일한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포함) 여러 과제로 중복 신청 불가능			구분	기업유형	구성	관련근거	주관 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필수 (1개)	· (대기업)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특별법 등에 의한 기업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참여 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필수 또는 선택	·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등에 의한 기업 ※중소기업인증서 등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의한 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등 (창업한지 7년 이내 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	필수 (2개 이상)	구분	주요역할	주관기관	· 총괄 기획 및 사업 관리, 과제 목표 및 성과관리 · 사업비 예산 집행 관리, 보유 IP, 자산 협업 및 지원 등	참여기관
구분	기업유형	구성	관련근거																			
주관 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필수 (1개)	· (대기업)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특별법 등에 의한 기업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참여 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필수 또는 선택	·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등에 의한 기업 ※중소기업인증서 등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의한 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등 (창업한지 7년 이내 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	필수 (2개 이상)																				
구분	주요역할																					
주관기관	· 총괄 기획 및 사업 관리, 과제 목표 및 성과관리 · 사업비 예산 집행 관리, 보유 IP, 자산 협업 및 지원 등																					
참여기관	·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작, 인공지능(AI) 기술 구현 · 인공지능(AI) 기술 검증, 과제 목표 및 사업 성과 창출 등																					

지원조건	○ 과제 가이드라인의 과제목적, 과제설정 방향, 과제목표, 과제내용 참고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6년 5월 15일, 8개월 예정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규모	○ 국고보조금 210억 원 (과제별 70억 원 x 3개 과제)
자부담률	○ 총사업비의 총 30% 이상, 현금
사업비 편성기준	○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국고보조금 최대 70억 원, 자기부담금 최소 30억 원 이상) ○ 국고보조금: 대기업 10% 이하, 중견기업·중소기업·창업기업 자율 편성 ○ 자기부담금: 대기업·중견기업 국고 대비 100% 이상,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총사업비 국고의 10% 이상 ○ 운영비-위탁용역비: 총 사업비의 30% 이하 편성 ○ 운영비-임차료: 사업에 필요한 행사장, 팝업 공간 등은 자부담 우선 편성 * 사무실 임차료 불가
지원과제	○ 총 3개

[과제 가이드라인]

1) 과제목적

- 컨소시엄이 보유한 기획력과 자금력, 보유 IP 등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와 AI기술을 더해 새로운 콘텐츠 형태 실증 또는 산업 환경 구축 등 작성

2) 과제방향

- 본 사업은 K-콘텐츠 AI 혁신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①문화 콘텐츠 결과물, ②문화콘텐츠와 인공지능 기술 혁신 및 융합, ③선도형 과제 이어야 합니다.
- ※ **선도형 프로젝트: 인공지능 콘텐츠 산업 구조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성과형 혁신 사업'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산업을 확산시키며, '글로벌 확장성'이 높은 과제**

3) 과제목표

- 사업의 협약 기간 내 과제 완수 1식 (필수)
- 사업과제를 통한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필수)
- 사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계량 목표 3개 이상 작성
- ※ 사업목표 3개 이상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업실패', 국고보조금 전액 환수

4) 과제내용

- (**문화콘텐츠 AI기술 융합 및 혁신**) 콘텐츠 시장의 한계 및 AI기술 도입의 당위성과 제작, 소비 방식의 한계를 분석한 후, 문화콘텐츠와 AI 기술의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변화 필요성과 방안 제안
- (**콘텐츠 상생 생태계**) 주관기관·참여기관의 고유 역량을 기반으로 상호 보완적인 컨소시엄 시너지를 창출하여 인공지능 콘텐츠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 체계, 건전한 수익 배분 모델 등 비즈니스 상생 협력 관계 구축, 주관·참여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하나의 프로젝트 도출
- (**글로벌향 콘텐츠**) AI 융합 혁신을 통한 사용자의 몰입과 재미 요소를 기획하고 구체화하여 인공지능 콘텐츠 기술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품질 고도화
- (**사업화 모델 구축**) 인공지능 콘텐츠 단순 제작에 그치지 않고 산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업화 전략(수익모델, 글로벌 진출, 기술 고도화, 콘텐츠 확장성 등)을 포함한 방안을 제시하여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극대화

[총사업비 배분 방식 예시]

※ 자부담금 산정방법은 [1-3. 사업비세부산출내역서] 엑셀파일을 활용하세요.

예 시	국고보조금	총사업비의 70% 이내		
	자기부담금	총사업비의 30% 이상		
	국고보조금 (70억 원) 기준 자부담금 (현금)	국고지원금(A)	7,000,000,000원	
		국고지원금 편성 비율	대기업 7억 원 이하	중견기업 *기업별 자율조정
				중소기업·창업기업 *기업별 자율조정
		자기부담금(B)	3,000,000,000원(총사업비의 30%) 이상	
		자부담금 편성 비율	대기업 *국고 대비 100% 이상 -국고 7억 원인 경우 자부담 7억 원	중견기업 *국고 대비 100% 이상 -국고 10억 원인 경우 자부담 10억 원
				중소기업·창업기업 *기업별 자율조정 -주관기관 7억 원 이상
	총사업비(A+B)		10,000,000,000원 이상	

<FAQ>

1) 기존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작지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본 사업은 콘텐츠 산업 전장르 융합형 컨소시엄 참여형 공모로, 기획, 제작, 유통, 판매, 사업확장(IP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K-콘텐츠의 AI 파급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을 선도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 대기업 계열사, 자회사, 손회사입니다. 기업 구분이 무엇인가요?

→ 대기업으로 분류됩니다.

3) 기존 2025년 인공지능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 10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3개 이상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인력에 대해 e나라도움 시스템의 참여율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컨소시엄 구성 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 최소 참여제한만 있고, 최대 참여제한 개수는 없습니다.

※ 과제별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1개 이상 필수, 중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2개 이상 필수

5) 국고보조금이 70억 원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예시: 총사업비 100억 원(국고지원금 60억 원, 자기부담금 40억 원)

6)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관(혹은 참여기관)이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자부담금 총액이 자부담율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예시) 1. (주관기관 자부담금 30억 원, 참여기관 자부담금 0억 원) → 가능
2. (주관기관 자부담금 7억 원, 참여기관 자부담금 23억 원) → 가능
* 주관기관 최소 자기부담금은 7억 원 이상입니다.

7)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형태의 국고지원금, 자부담금 편성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구분	구분	국고지원금 편성 가능여부	자부담금 편성 가능여부
주관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
참여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	○	○
→ 비고	개인사업자, 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지원 불가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5. 7. 25. (금) ~ 2025. 8. 25. (월) ○ 접수기간: 2025. 7. 25. (금) ~ 2025. 8. 25. (월) 11:00:00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는 불가하며, 마감일은 e나라도움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접수 마감일 1일 전 접수를 권장합니다.								
사업설명회								
○ 일시: 2025. 8. 5.(화) 14:00 ~ 15:00 (60분) ○ 장소: 한국콘텐츠진흥원 CKL 11층 컨퍼런스룸 ※ 사업설명회 이후 담당자가 설명회 옆 회의실 대기 예정, 필요할 경우 개별 상담 진행 가능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 사업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70-9595) ■ 제출서류 목록 - 사업신청서(50쪽 이하 권고)(법인인감 미날인 시, 평가대상 제외) - 사업비세부산출내역서 (주관기관, 참여기관별 모두 작성) - 참여인력 이력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서명 누락 시 평가대상 제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서명 누락 시 평가대상 제외) - 사업자등록증 (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평가 시 '지역기업' 배점 항목은 주관기관만 해당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폴더트리 ※ 파일 용량이 50MB를 초과할 경우, e나라도움 신청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75 1467 454 1825" rowspan="2"> 주관기관명.ZIP (※50MB 이하) </td> <td data-bbox="526 1467 750 1825"> 1. 사업수행 (필수) </td> <td data-bbox="790 1467 1396 1825"> 1-1. 사업신청서_기업명(직인 날인본).PDF 1-2. 사업신청서_기업명.HWP 1-3. 사업비세부산출내역서_기업명.XLS 1-4. 참여인력 이력_기업명.HWP 1-5.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_기업명.XLS 1-6.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_기업명.PDF 1-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_기업명.PDF 1-8. 사업자등록증_기업명.PDF </td> </tr> <tr> <td data-bbox="526 1859 750 1971"> 2. 증빙서류 (선택) </td> <td data-bbox="790 1859 1396 1971"> 2-1. 기 제작 및 유통 콘텐츠 요약 설명자료 2-2. 기타 증빙서류 (계약 등 포함 기타 증빙자료) </td> </tr> </table>				주관기관명.ZIP (※50MB 이하)	1. 사업수행 (필수)	1-1. 사업신청서_기업명(직인 날인본).PDF 1-2. 사업신청서_기업명.HWP 1-3. 사업비세부산출내역서_기업명.XLS 1-4. 참여인력 이력_기업명.HWP 1-5.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_기업명.XLS 1-6.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_기업명.PDF 1-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_기업명.PDF 1-8. 사업자등록증_기업명.PDF	2. 증빙서류 (선택)	2-1. 기 제작 및 유통 콘텐츠 요약 설명자료 2-2. 기타 증빙서류 (계약 등 포함 기타 증빙자료)
주관기관명.ZIP (※50MB 이하)	1. 사업수행 (필수)	1-1. 사업신청서_기업명(직인 날인본).PDF 1-2. 사업신청서_기업명.HWP 1-3. 사업비세부산출내역서_기업명.XLS 1-4. 참여인력 이력_기업명.HWP 1-5.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_기업명.XLS 1-6.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_기업명.PDF 1-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_기업명.PDF 1-8. 사업자등록증_기업명.PDF						
	2. 증빙서류 (선택)	2-1. 기 제작 및 유통 콘텐츠 요약 설명자료 2-2. 기타 증빙서류 (계약 등 포함 기타 증빙자료)						
※ 그 외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기타 참고자료 ZIP파일 내 폴더트리 외 포함 가능(영상 등)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①1단계: 서면·발표평가, ②중간심의, ③2단계: 최종선정평가, ④종합심의(사업비 조정 등)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단계	평가방법	내용	선정 과제수
1단계	서면평가	- 사업신청서, 제출 서류	최종선정 과제의 3배수 내외
	발표평가	- 사업신청서, 제출자료, 발표자료 - 최종점수: 서면(40%)+발표(60%)	최종선정 과제의 2배수 내외
중간심의		- 과제별 사업 목표, 내용, 예산 등 검토	-
2단계	최종선정평가	- 사업신청서, 제출자료, 발표자료 등	최종선정 과제의 1배수
종합심의		- 최종선정 여부, 사업신청서 보완, 총사업비 확정 등	최종 3개 과제 선정

※ 선정 절차는 신청 과제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서면평가 통과 시, 안내받은 기한 내 추가로 발표자료(50쪽 이내, PPT 등) 제출 필수(별도 안내 예정)

- 1단계(서면)평가: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3배수 내외)를 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 1단계(발표)평가: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통과, 서면평가 40%+발표평가 60% 고득점 순 최종선정평가 대상으로 선정
- 2단계 최종선정평가: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동점자 발생 시, 평가지표 중 [과제내용] 배점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 최종선정 과제 협약 취소 등 대비 후순위 예비과제 선정 가능

○ 평가기준

- 1단계 서면 및 발표 평가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배점
수행기관 (20)	■ 컨소시엄 전문성	- 주관·참여기관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 체계	10점
	■ 해외진출 역량	- 주관기관의 해외진출 경험, 관련 조직, 네트워크 등	10점
과제기획력 (25)	■ 과제 이해도	- 인공지능(AI) 콘텐츠 혁신 선도형 사업 목적의 적합성	15점
	■ 기획 완성도	- 과제 계획의 착수 가능 수준의 구체성 및 현실성 확보	10점
과제내용 (25)	■ AI기술 융합성	- 인공지능(AI) 기술 실효성	5점
	■ 독창성·대중성	- 과제 내용이 차별적, 참신성, 대중 공감성, 품질 등	10점
	■ 글로벌 경쟁력	- 인공지능(AI) 콘텐츠 품질 글로벌 경쟁력 수준	10점
기대성과 (20)	■ 목표 타당성	- 제시한 목표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	10점
	■ 산업 파급력·산업 상생 확대	- 콘텐츠 산업 상생을 통한 콘텐츠 생태계 확산	10점
사업비 (10)	■ 사업비 적절성	- 총사업비 편성 내역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5점
	■ 자기부담금 편성	- 자부담 배분 적절성, 자부담 계획 실현 가능성	5점
합계			100점

* 가점: 서면평가 시 주관기관이 자기부담금 50% 이상 부담할 경우 가점 1점

- 2단계 최종선정평가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배점
수행기관 (15)	■ 컨소시엄 전문성	- 주관·참여기관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 체계	5점
	■ 해외진출 역량	- 주관기관의 해외진출 경험, 관련 조직, 네트워크 등	5점
	■ 재무건전성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기업신용데이터 정보조회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합산 배점 평균(반올림)	5점
과제기획력 (20)	■ 과제 이해도	- 인공지능(AI) 콘텐츠 혁신 선도형 사업 목적의 적합성	10점
	■ 기획 완성도	- 과제 계획의 착수 가능 수준의 구체성 및 현실성 확보	10점
과제내용 (25)	■ AI기술 융합성	- 인공지능(AI) 적용 실효성 - 인공지능(AI) 융합 기술 고도화 수준	5점
	■ 독창성·대중성	- 과제 내용이 참신한 정도, 콘텐츠 재미 공감 정도	10점
	■ 글로벌 경쟁력	- 인공지능(AI) 콘텐츠 품질 글로벌 경쟁력 수준	10점
기대성과 (25)	■ 목표 타당성	- 제시한 목표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	10점
	■ 산업 파급력·산업 상생 확대	- 인공지능(AI) 콘텐츠 산업 성과 창출 규모 - 콘텐츠 산업 상생을 통한 콘텐츠 생태계 확산	15점
사업비 (10)	■ 사업비 적절성	- 총사업비 편성 내역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5점
	■ 자기부담금 편성	- 자부담 배분 적절성, 자부담 계획 실현 가능성	5점
ESG(5)	■ 일자리창출	-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2점
	■ 지역기업(계량)	- 주관기관 지역기업 여부 (본사 기준)	3점
합계			100점

지원금 지급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3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50% 지급
 - 2차 지원금: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통과 후 총 지원금의 30% 지급
 - 3차 지원금: 협약기간 종료 이전 총 지원금의 20% 지급

지원요건

-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 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와 연구개발사업은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 2. 해당 없음
-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 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 사업문의: AI융복합콘텐츠팀(☎061-900-6550, 6350)
-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콘텐츠금융제도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용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용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참고] 2025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 *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 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업 재무평가를 통해 보증기관에 추천하여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보증 제도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 ○ 콘텐츠금융제도(투자·용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기타사항	
○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2단계 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해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며, 서로의 의무 이행현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 (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6조) - 1.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 2. 사업비의 관리, 집행 및 정산, 3. 지원과제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기타 사업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5조 및 제15조의2,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체결·관리하여야 함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 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 (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제42조) ○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50조)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단,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 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